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 출 자 : 곽길영의원외 6인

2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성주군의회의원 의정비 심의결과가 통보되어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제2항에 따라 「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(안)제4조(월정수당지급)제1항 월정수당 지급기준 월154만원을 월156만 6천원으로 정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

나. 예산조치 : 예산반영

다. 기 타

- 성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성주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통보
- 조례안예고 : 의견 없음〔2014. 11. 11~ 11. 20〕

5. 검토내용

○ 발의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는 성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지난 10월 27일 성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,

○ 특히,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하여 최근 5년간 월정수당이 동결된 것을 감안할 때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